

●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-42호

2026년 6월 22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7월 20일
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

개선권고 재결공고[목포해심 제2026-017호(어선 제702삼문호 · 어선 썬호 충돌사건)]

사 건 명 : 어선 제702삼문호 · 어선 썬호 충돌사건

피요청자 : 박**(****. **. ***)

제***** *** **

귀하는 어선 썬호 선장으로 승선 중 2024. 1. 18. 09:37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등대로부터 228도 방향 약 3.18해리 해상에서 어선 제702삼문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.

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제702삼문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썬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지만 썬호가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입니다.

따라서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박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피항협력동작이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